

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841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2. 27 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대상에 포상범위를 생존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로 확대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사망자의 공적도 포상대상에 포함(안 제2조)
- 포상대상자가 사망등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2조의2)

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: 2004. 1. 7 ~ 2004. 1. 27, 의견내용 없음

4. 본 문 : 붙임

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단서중 “다만,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”를 “다만,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여 할 수 있으며,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여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포상수령)포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포상대상)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, 군민(“외국인을 포함한다” 이하 같다) 및 단체에 행한다. 다만,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(신 설)</p>	<p>제2조(포상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다만,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여할 수 있으며,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제2조의2(포상수령) 포상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.</p>